

# 9. 國土利用管理法中 改正法律(案) 立法豫告

建設部公告第1993-88號 1993. 6. 2

## 1. 개정취지

국민경제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보전위주의 국토이용관리체계를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용토지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용도지역을 단순화하고,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과 아울러 실효성 없는 가격심사제 폐지등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개선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 구분을 종전 10개 지역에서 5개지역으로 단순화하여 개발가능토지를 확대하고 국토이용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중 도시지역과 공업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취락지역, 관광휴양지역, 개발촉진지역을 준도시지

역으로, 경지지역중 농업진흥지역과 산림보전지역중 보전입지를 농림지역으로, 경지지역중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과 산림보전지역중 준보전입지를 준농림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산자원보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각각 통합함.

나. 국토이용의 질서유지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은 국토건설종합계획에 의한 토지수급계획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 전원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도시지역외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준도시지역으로 결정

된 것으로 봄.

라. 농림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하여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농업진흥지역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보전임지는 산림법을 각각 적용토록 함.

마. 준농림지역은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제한만을 이 법에서 규정하여 환경오염의 위험이 있는 공장, 부지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건축물·공작물등을 제한토록 함.

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규제대상을 소유권에 한정함.

사. 토지거래허가의 심사기준중 실효성이 없는 가격심사를 폐지하여 실수요자의 토지 취득을 용이하게 함.

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때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매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매수함.

자. 선매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허가후에 미이용전매

토지를 선매대상에 넣으므로써 사후 관리를 강화토록 함.

차.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는 자에 대한 허가취소, 공사중지 명령, 과태료부과 등의 불이익처분시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함.

카. 벌칙조항의 벌금액을 현실화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

###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16절지 세워서 작성)을 건설부장관(참조: 토지이용계획과, 전화번호 503-73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